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28
----------	-------

발의연월일 : 2025. 8. 29.

발 의 자 : 윤종오 · 손 술 · 정혜경
전종덕 · 김준형 · 박은정
용혜인 · 김재원 · 한창민
최혁진 · 황운하 · 서왕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정부는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등을 명분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4%로 하는 등 각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고, 외국자회사의 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 등의 감세를 강행했음.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언했던 기업 투자 확대나 경제 활성화는 실현되지 않았음. 이른바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임. 오히려 2022년 385.2조원이던 국세수입은 2024년 326.2조원으로, 법인세수는 103.6조원에서 62.5조원으로 감소해 세수만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윤석열 정부는 또한 국내 자본 리쇼어링 촉진을 이유로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했으나, 주요 재벌 대기업은 리쇼어링 대신 외국 자회사의 배당액만 크게 늘렸고, 그 결과 수조원 규모의 법인

세 감세 혜택만을 누리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경기침체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현재 상황에서, 소수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주로 귀착되고 세수 부족만 초래한 법인세 감세 정책을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음. 법인세 감세를 중단하고 시급히 복원해야 함.

이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나머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여, 무리한 감세 정책 때문에 줄어든 세수를 확충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및 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제41조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7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제57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를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 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 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 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 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 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 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 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 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 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 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u><삭 제></u>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를」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수입배당금액

2.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
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
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
다)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
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외
국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방법,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

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 6. (생략)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산입) -----

-----.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 6. (현행과 같음)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

-----.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
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
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
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illegible]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 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 원 이 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19)
200억 원 초 과 3천억 원 이 하	37억8천만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 원 초 과	625억8천만원 +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 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 원 이 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20)
200억 원 초 과 3천억 원 이 하	39억7천800만원 + (200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100분의 22)
3천억 원 초 과	655억7천800만원 + (3 천억원을 초과하는 금 액의 100분의 25)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 표준	세율
200억 원 이 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9
200억 원 초 과 3천억 원 이 하	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21)
3천억 원 초 과	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24)

② (생략)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 ⑥ (생략)

⑦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
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
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생략)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
4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

과세 표준	세율
200억 원 이 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 원 초 과 3천억 원 이 하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22)
3천억 원 초 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25)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삭제>

⑧ (현행과 같음)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 ⑥ (생략)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를 준용한다.

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를 준용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	------------